

研究論文

朝鮮朝 中宗 以後 景宗代의 鄉樂과 唐樂*

신 대 철**

I. 머리말	IV. 仁祖代(1623~1649)~景宗代(1720~1724)의 鄉樂과 唐樂
II. 中宗代(1506~1544)~明宗代(1544~1567)의 鄉樂과 唐樂	V. 맺음말
III. 宣祖代(1567~1608)~光海君代(1608~1623)의 鄉樂과 唐樂	<참고문헌> <국문요약>

I. 머리말

高麗의 음악을 수용한 朝鮮朝 宮中音樂은 朝鮮朝 初와 世宗代(1418~1449)를 거쳐 成宗代(1470~1494)에 이르기까지 크게 隆盛했지만, 이후 점점 그 빛을 잃어갔다. 조선조 궁중음악 중 鄉樂과 唐樂은 간혹 궁중의 祭禮에 쓰였고, 唐樂이나 당악계의 음악은 鼓吹에서 行樂으로 오랫동안 쓰였지만, 이 두 갈래의 음악은 주로 宴享에서 쓰인 음악이었다. 즉 향악과 당악은 주로 享受의 음악으로 쓰였다.

음악은 用途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일 수 있다. 오늘날 음악이 쓰이고 있는 範圍와 폭은 과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래서 常軌를 벗어난 인간 본연의 心性이나 美風良俗을 저해할 목적의 음악적 쓰임이 아니라면 음악의 쓰임을 특별히 區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래도 음악의 근본적 존재 이유와 그

* 본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년도 단독과제로 수행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음악학 전공(sheenone@aks.ac.kr).

쓰임은 享受를 목적인 것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의 궁중음악에서 주로 향수의 목적으로 쓰인 향악과 당악에 焦點을 맞추어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高麗史』樂志는 고려조의 궁중에서 쓰인 三國 이래의 향악과 중국의 宋(960~1279)으로부터 유입한 많은 수의 당악을 소개하고 있다. 비록 이 중에서 사라진 곡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이들 향악과 당악은 조선조의 궁중에서도 지속적으로 演奏 및 향수되었다. 그러나 조선조 후대로 오면서 이 두 갈래의 음악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갔고, 이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전하면서 연주되고 있는 당악곡은 오로지 步虛子와 洛陽春 두 곡뿐이다. 물론 오늘날로 傳承되어 연주되고 있는 향악곡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지금까지 우리의 향악과 당악을 역사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적지 않았지만, 그 대부분은 이 두 갈래 음악 중 일부 몇 몇 곡의 음악적 변천에 초점을 둔 연구였다. 그리고 이외에 당악의 수용에 초점을 둔 연구결과도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우리의 향악과 당악에 관한 많은 음악적 정보가 축적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악과 당악의 쓰임, 특히 향수에 초점을 두어 고려조에서 조선조 말에 이르는 이 두 갈래 음악 모두의 지속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본 연구자는 알고 있다. 본 연구자가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중 일부의 문제를 살펴본 두 편의 연구결과가 있을 뿐이다.¹⁾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와 直接, 또는 間接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 두 연구가 唯二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만큼 오늘날까지 이 두 갈래 음악의 지속 과정을 살펴본 글은 드물었다.

이 두 연구결과 중 前者에서는 그 題目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 이후 조선조 초 太宗代(1400~1418)에 이르는 향악과 당악의 쓰임을 통한 그 지속 과정이 다루어졌다. 즉 이 글은 『고려사』 악지의 향악과 당악은 고려의 궁중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조선조의 궁중으로 자연스럽게 단절 없이 전해져 사용된 이 두 갈래의 음악에는 어떠한 곡이 있으며, 또 이들 음악은 어떻게 사용되고 향수되어졌는지를 살펴본 연구결과이다.

1) 申大澈, 「高麗와 朝鮮朝 初의 鄉樂과 唐樂」, 『李惠求博士九旬記念音樂學論叢』(李惠求學術賞運營委員會, 1998), 243~262쪽; 申大澈, 「世宗代 以後 燕山君代의 鄉樂과 唐樂」, 『韓國音樂研究』, 第29輯(韓國國樂學會, 2001), 81~119쪽.

後者에서는 세종대(1418~1449)에서 연산군대(1494~1506)에 이르는 동안의 이 두 갈래 음악의 여러 면들과 함께 세종대의 왕성한 음악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創制된 여러 향악과 당악들이 전자의 글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어지면서 조명되었다. 그 결과 새롭게 창제된 음악의 등장으로 세종대에 풍부해진 이 두 갈래 음악의 세계가 조선조 연산군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연산군대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수의 고려 이후의 기존 향악과 당악이 세종대에 창제된 새로운 향악·당악과 함께 조선조의 궁중에서 큰 단절 없이 지속 및 향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두 연구결과는 말 그대로 고려에서 조선조의 연산군대에 이르는 향악과 당악의 쓰임을 통해 본 지속 과정이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조선조 궁중의 향악과 당악은 조선조 후대로 오면서 어떻게 쓰였을까? 특히 조선조 초까지만 해도 그 수가 적지 않았던 이 두 갈래의 궁중음악이 中宗代(1506~1544)에서 景宗代(1720~1724)에 이르는 2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持續되었을까? 이 두 갈래의 음악 중 어떤 곡들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궁중의 어떤 場에서, 어떻게 연주되었을까? 이러한 점들은 연구자의 오랜 지속적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아 위 시기의 朝鮮朝 宮中の 鄉樂과 唐樂의 持續 過程을 밝혀 韓國音樂史 理解의 地平을 조금이라도 넓혀보려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출발한 이 연구는 당연히 위 두 연구의 후속 연구 중의 하나가 된다.²⁾

II. 中宗代(1506~1544)~明宗代(1544~1567)의 鄉樂과 唐樂

燕山君의 폭정을 몰아낸 反正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中宗은 前王에 의해서 극도로 문란해진 정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³⁾ 유교에 바탕을 둔

2) 이하 본문에서 구분된 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고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향악 및 당악과 관련된 자료의 量的 多少에 근거했음을 밝힌다.

3) 韓祐欣, 『韓國通史(改訂版)』(乙酉文化社, 1996), 278쪽.

정치를 통해 그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는 趙光祖(1482~1519)를 중심으로 한 新進 士類를 기용하여 혁신정치를 실천하려고 하였으나, 역사의 흐름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아니 하였으며, 이후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土禍를 거치는 등 안정과는 거리가 먼 어려운 정세가 계속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정세 속에서의 이 시기 조선조 궁중의 향악과 당악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4)

1. 鄉樂과 唐樂에 대한 論議와 鄉樂과 唐樂

『中宗實錄』은 前代의 실록과는 달리 향악과 당악의 쓰임이나 演奏된 사실적 기술을 담고 있지 않고, 이 두 갈래 음악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當時의 인식이나 태도에 바탕을 둔 이 두 갈래 음악에 관한 논의를 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이 두 갈래의 음악이 어떻게 연주되었는지는 『중종실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중종대의 이 두 갈래 음악의 존재와 향수의 정도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종실록에 이 두 갈래의 음악은 어떻게 담겨 있을까?

保太平과 定大業 : 보태평과 정대업은 아래의 인용과 같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향악이었다. 물론 그 까닭은 이들 음악은 조선조에 필수불가결한 음악으로 <인용 1>에서와 같이 국가적으로 폐지될 수 없는 음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태평과 정대업의 闕習은 당연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5)

<인용 1> 장악원 도제조 유순정 … 등이 아퇴기를 … 정대업 등과 같은 음악은 국가에서 폐지할 수 없는 음악입니다 … (掌樂院 都提調柳順汀 … 啓曰 … 定大業等樂 國家不可廢之…).6)

-
- 4) 조선조 향악과 당악을 다룬 이전의 拙稿, 「世宗代 以後 燕山君代의 鄉樂과 唐樂」에서는 향악과 당악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진술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과는 달리 이 둘이 통합되어 진술될 예정이다. 그 까닭은 중종 이후의 이 두 음악에 관한 기록은 분리되어 진술될 정도의 양이 못 되기 때문이다.
 - 5) 中宗 5年(1510) 12月 庚子(18日), “掌樂院提諫 … 請古例 如定大業保太平等樂 代以樂工闕習 … 上可之.”
 - 6) 中宗 5年 11月 壬申(20日), 이 글을 위한 한글 번역의 참고는 韓國學中央研究院의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資料集』을 주로 하였으며, 미심한 부분은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번역

牙拍·響鉞·舞鼓·處容舞 : 중종 초기 앞의 세 鄉樂呈才는 <인용 2>와 같이 불만한 춤으로 인식되었다.⁷⁾

<인용 2> 가동과 무동은 그 익히는 것이 다만 아박, 향발, 그리고 무고입니다. 그들이 이 정재들을 배운지가 오래 되지는 않아서 익숙하게 출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정재들은 불만합니다. … (歌舞童 則其闊習 只牙拍響鉞舞鼓等樂 而已 傳習未久 雖不精熟然頗可觀 …).⁸⁾

위의 세 향악정재에서 牙拍은 動動慢機와 中機를, 響鉞은 唐樂 步虛子승을, 舞鼓는 井畚의 慢機·中機·急機를 각각 반주음악으로 사용하였다.⁹⁾ 향발은 향악정재임에도 당악곡이 반주음악으로 사용된 춤과 음악이 鄉唐交奏된¹⁰⁾ 정재였다. 아박과 무고를 출 때에는 각각 동동만기와 중기, 그리고 정음사의 명이 수반되었다. 그런데 周知하듯이 이 두 정재의 原來 歌詞는 大提學 南袞(1471~1527)에 의하여 각각 音律이 서로 맞는 新都歌와 五冠山의 歌詞로 대체되었고, 이와 함께 處容舞에 불리던 불교적인 내용의 靈山會相과 本師讚·彌陀讚의 歌詞는 각각 壽萬年詞와 中興樂詞로 대체되었다. 그 까닭은 靈山會相과 本師讚·彌陀讚 2곡은 異端의¹¹⁾ 歌詞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음사가 이단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¹²⁾ 그 歌詞가 오관산으로 바뀌어졌다는 견해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處容舞는 중종대에도 여전히 歲時에 演行된 古例였으나 災變으로 演行이 정지되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이후 除夕에 處容舞는 다시 등장하였다.¹⁴⁾ 『樂學軌範』에 의하면 처용무 연행에는 靈山會相과 本師讚·彌陀讚 다음에 觀音讚의 歌詞도 唱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된 『中宗實錄』에 의하면 관음찬이 다른 歌詞로 대체되

본을 참고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손질을 하였다.

7) 우리음악은 樂·歌·舞가 하나로 된 음악이기 때문에 정재도 본고에서 함께 다루어졌다.

8) 중종 5년(1510) 12월 癸卯(21일).

9) 『樂學軌範』 時用鄉樂呈才圖儀.

10) 申大澈, 앞의 논문(2001), 105쪽.

11) 중종 13년(1518) 4월 기사(1일).

12) 張師勛, 『增補韓國音樂史』(世光音樂出版社, 1986), 353쪽.

13) 중종 36년(1541) 11월 병오(24일). “…歲時觀處容舞 乃古例也 然今有災變 動樂未安 勿僞可也…”

14) 중종 38년(1543) 정월 입자(7일).

었다는 언급이 없다. 물론 관음찬도 불교적인 내용으로 된 歌詞여서 朝鮮朝의 입장으로 보면 異端의 歌詞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南袞이 이에 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中宗代의 처용무에서 관음찬은 불리지 않았을까? 물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까닭은 아래와 같다. 즉 本師讚·彌陀讚·觀音讚의 가사는 연달아 唱되었다. 그런데 앞의 두 가사가 이단으로 여겨져 바뀌었는데 그 바뀐 새 가사에 이어서 이단의 관음찬이 불렀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당시 관음찬의 가사는 처용무를 출 때 분명히 생략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악학궤범』의 관음찬은 중종대에 이르러 처용무 정재에서 사라졌다고 봄이 옳다.¹⁵⁾

<인용 3>에 의하면 중종대의 향악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음악이었다. 이 평가에 의하면 우리의 禮樂은 근본이 없는 것이 되었고, 향악은 正樂이 아닌 鄭衛의 형편없는 음악으로 비하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향악이 비하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우리음악이 ‘國樂’으로 호칭된 사실은 눈여겨볼만하다. 오늘날 우리음악을 아우르는 ‘國樂’의 용어가 『중종실록』에 <인용 3>과 같이 등장하였다.¹⁶⁾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國樂’의 용어가 1905년 이후의 식민지 시대에 ‘일본국민음악’을 줄인 용어로 탄생하였다는 주장과 그 배경설명은¹⁷⁾ 再考를 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용 3> 시가관 이청이 아뢰었다. “... 우리나라 예악을 보면 본디 근본이 없는데 이제는 점점 더 경박스럽고 더럽게 되어 갑니다. 街巷의 악은 모두 正聲이 아니고 鄭衛의 樂과 같아오니 비록 갑자기 모두 고쳐 복원하지는 못할지라도 예관은 모름지기 유의해야 합니다.” ... 특진관 이장곤이 아뢰었다. “우리나라의 악은 古意를 祖述한다고는 하지만 순수한 正樂이 아닙니다. ... 國樂이 上國에서 전해졌지만 ...” ... 이청이 또 아뢰었다. “우리나라의 樂은 음

15)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高宗 30年(1893)의 『呈才舞圖笏記』에 의하면 처용무의 춤이 끝나기 직전 관음찬이 불려졌다. 즉 관음찬이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부활의 과정에 대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 “至本師觀音讚 並如上導唱和之” 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4): 呈才舞圖笏記』(1981), 184쪽.

16) 『중종실록』의 이전에도 國樂의 용어가 쓰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朝鮮朝 朝廷의 공식 기록물인 실록에 기록된 사실에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 기록이 ‘國樂’이란 용어의 嚆矢일지도 모른다.

17) 노동은, 「한국음악인들의 현실인식과 수행」, 노동은·이건용, 『民族音樂論』(한길사, 1991), 180~182쪽.

성이 심히 어그러져 세쇄한 末節도 오히려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어느 거를에 그 기본을 일으키겠습니까? … (侍講官李清曰 … 我國之禮樂 素無根本 今漸偷惡 街巷之樂皆非正聲 類似鄭衛之樂 雖不能遞皆修復 禮官須留意焉 … 特進官李長坤曰 我國之樂祖述古意 然非真正樂也 … 國樂雖傳於上國 … 李清曰 我國之樂音聲甚訛 末節猶未能正 何暇於與其本乎 …).¹⁸⁾

蓮花臺·夢金尺·獻仙桃·受明命·荷皇恩·賀聖明 : 당악정재 연화대·몽금척·현선도·수명명·하황은·하성명은 당시에도 중단 없이 연행된 樂舞였다. 그러나 당시 향악의 가치가 <인용 3>과 같이 비하된 것처럼 당악정재 일부에 대한 평가도 <인용 4>와 같이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인용 4> 정원이 장악원 도제조 김근사의 뜻으로 “정대업·연화대·몽금척·현선도 등의 음악은 雜戲에 가까워서 쓸 수가 없을 듯하고, 수명명·하황은·하성명 등의 음악은 지금 학습하고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신이 혹시 악곡명을 묻는다면 황황자화·녹명·천보·사모란 가명으로 대답함이 어떻겠습니까?” 물어 아뢰니 아뢰대로 하라고 傳敎하였다(政院以掌樂院都提調 金謹思意啓曰 定大業 蓮花臺 夢金尺 獻仙桃 等樂 近於雜戲 似不可用 而受明命 荷皇恩 賀聖明 等樂 今方學習 故用之 天使等 聞其樂名 則以皇皇者華 鹿鳴 天保 四牡 假名以答之何如 傳曰如啓).¹⁹⁾

<인용 4>의 정대업은 향악정재이고, 연화대는 당악정재이다.²⁰⁾ <인용 4>에 의하면 會禮를 위해 창제된 정대업은, 세조 이후 주로 宗廟樂으로 사용되었으나, 宴享에도 쓰인 樂이 된다. 연화대와 현선도는 중국의 宋으로부터 유입된 당악정재이다. 그리고 몽금척·수명명·하황은·하성명은 조선조 초 太祖에서 世宗에 이르는 시기에 이 땅에서 제정된 당악정재이다. 그런데 정대업·연화대·몽금척·현선도는 雜戲에 가까운 樂으로 규정되었고, 수명명·하황은·하성명은 중국의 사신을

18) 중종 14년(1519) 2월 병인(21일).

19) 중종 32년(1537) 3월 경인(11일).

20) 『樂學軌範』의 時用唐樂呈才圖儀에 의하면 연화대는 당악정재이다. 그러나 연화대가 同時用鄉樂呈才圖儀의 鶴蓮花臺處容舞合設과 教坊歌謠에서 연행될 경우에는 향악정재로 분류 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당악정재와 함께 거론된 것으로 보아 당악 정재로 보인다.

위해 연주는 하되 중국의 사신이 물으면 이들 정재의 樂名을 황황자화·녹명·천보·사모와 같은 중국의 雅樂名으로 대답하면 어떻겠느냐는 아뢰에 그렇게 하라고 한 王의 傳敎는 가슴을 아프게 한다. 국가 대사의 하나로 중시된 정대업을 포함한 당시의 향악정재와 당악정재에 대한 증증과 그 신하들의 평가는 이렇게 낮았다.²¹⁾

『中宗實錄』에 담긴 향악과 당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은 위와 같이 소략하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이 두 갈래 음악에 대한 평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향악과 당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 中宗이 反正을 통해 燕山君을 몰아내고 들어선 王이었기 때문으로 본다. 前王 연산군이 향악과 당악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한 예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中宗 주위의 士林들에게는 이를 부정적으로 봄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략한 기록과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확인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향악과 당악은 분명히 中宗代의 궁중에서 강한 힘으로 實存하고 있었고, 또 演奏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위와 같은 향악과 당악에 관한 논의의 존재 자체가 이 두 갈래 음악의 實存과 演奏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략한 기록과 부정적인 평가에 의한다면, 中宗代의 향악과 당악의 實存力은²²⁾ 前代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²³⁾ 그리고 향악과 당악에 대한 위와 같은

21) 『악학궤범』의 世宗朝隨月用律과 八月養老宴 및 九月養老宴 雅樂에 의하면 <인용 4>의 수명명·하황은·하성명 중 수명명과 하황은은 아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용 4>에서의 수명명·하황은·하성명은 당악정재로 보인다. 그 까닭은 이 셋 모두가, 정대업을 제외하면, 당악정재인 다른 樂舞들과 함께 거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중국의 사신이 이들 아곡명을 물으면 가명으로 아악명인 황황자화·녹명·천보·사모 등으로 대답하라고 한 까닭은 수명명·하황은·하성명의 세곡 創製가 모두 중국 황제의 은덕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위와 같이 원래의 제 곡명으로 소개될 수 없었음은 가슴 아픈 일임에 분명하다.

22) ‘音樂의 實存力’은 필자에 의한 造語이다. 필자는 음악의 실체가 존재하면서 연주되고 있는 현상을 음악적 ‘힘’으로 보고 ‘實存力’의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즉 어떤 음악이 樂譜의 有無와 상관없이 자주 연주되면서 존재할 때는 ‘강한 실존력[強實存力]’을 가진 음악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강도에 따라 ‘약한 실존력[弱實存力]’, 혹은 ‘無實存力’을 지닌 음악 등등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 악보는 존재하나 연주되지 않고 있는 음악은 ‘虛實存力’의 음악이 되며, 樂曲名만 전하고 악보나 음악 모두가 전하지 않는 음악은 당연히 ‘無實存力’의 음악이 된다.

23) 『中宗實錄』에 향악과 당악에 관한 드러난 기록이 위와 같다고 하여 위에서 언급된 향악과 당악의 아곡만이 증증대에 연주되었다고 보아서 안된다. 당악이 연주된 文昭殿과 延恩殿을 비롯한 여

부정적인 논의가 바로 이렇게 弱화된 鄉樂과 唐樂의 實存力을 있게 한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2. 女樂에 대한 論議와 鄉樂과 唐樂

주지하듯이 各種 祭享에서 연주될 때를 제외하고 당악과 향악은 그 대부분이 朝鮮朝의 궁중에서 朶才와 함께 연주되었다. 대부분의 정재는 女樂을 필요로 한다. 정재를 담당하는 이들은 그 대부분이 女妓였고, 女妓를 필요로 하는 演行의 場은 대개가 ‘00宴’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의 향악과 당악의 演行은 당연히 享受의 목적을 지닌다.²⁴⁾ 이러한 演行에서 女樂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상당수 향악과 당악의 實存力은 女樂에 의해서 左右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당시의 분위기는 향악과 당악을 담당한 여악에 대해서 아래의 몇몇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부정적이었다.

<인용 5> “... 여악은 그 내력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악은 廢主[燕山君] 때에 이르러 법도를 깨뜨리고, 몸을 망하게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이 亂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다듬어 혁파하시고자 하시나, 대신들이 예전처럼 두고자 함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통절한 마음으로 혁파하십시오. ...” “여악은 참으로 혁파할 수 없다. ... 윤희하지 않는다”(... 女樂其來已久 至廢主 敗度亡身 此爲亂本 殿下銳意欲革 而大臣 欲因舊 甚不便 請痛革 ... 女樂固不可革廢 ... 以是不允).²⁵⁾

<인용 6> 집의 박수교가 아뢰었다. “여악은 결연히 없앤 뒤에 代用할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하고, 조광조는 “이는 王化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內宴 때문에 그대로 두면 후세의 기풍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혁파해야 합니다”

러 祭享과 進宴, 賀禮, 鼓吹가 수반되는 祭享과 儀禮가 중종대에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곡들보다 훨씬 많은 향악곡과 당악곡이 당시에 연주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24) 당시의 音樂享受는 오늘날의 예술 감상을 의미하는 향수와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상황 속에서의 향악과 당악의 향수는 감각적이고도 쾌락적인 의미가 강한 향수로 봄이 옳다.

25) 중종 5년(1510) 10월 을미(12일).

라고 하였다(執義朴守教曰 女樂史然去之之後 講究其代用者可也 光祖曰 此乃 王化所關 爲內宴而存之 不免後世之譏 宜則革去).²⁶⁾

<인용 7> 대간이 여악 혁파하기를 청하니, “나도 혁파하고 싶으나 內宴과 中宮의 陳賀 때에는 음악이 필요하니 혁파할 수 없다”고 하였다(大諫請革罷女樂 傳曰 予亦欲革 只以內宴及中宮陳賀之時 有動樂節次 不可革也).²⁷⁾

『중종실록』에는 이외에도 女樂을 부정적으로 보아 女樂의 革罷를 주장한 논의가 무수히 담겨있다. 물론 여악 혁파를 주창한 士林의 중심인물로는 趙光祖가 가장 대표된다. 유교적인 도덕 정치의 실현에 힘을 기울인²⁸⁾ 조광조를 비롯한 여러 士林들의 눈에 연산군이 즐긴 여악은 혁파 대상의 하나였을 뿐이다. 물론 中宗은 이들의 집요한 여악 혁파 주장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도 여악 혁파를 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용 7>에서 본 바와 같이 여악은 언제나 內宴이나 中宮을 위해서 存置되었다.

이렇게 中宗代에 강력하게 여악의 혁파가 논의되었고, 향악과 당악의 가치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低平罷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燕山君의 荒淫과 亂政으로 인한 樂, 특히 女樂의 誤用 및 濫用이라고 본다. 그래서 反正으로 대거 등장한 趙光祖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류들은 성리학에 입각하여 여러 제도와 함께 여악제도도 끊임없이 개혁하려 하였다. 그러나 外方의 女樂은 혁파되었으나 궁중의 여악은 內宴에 쓸 樂·歌·舞 때문에²⁹⁾ <인용 7>과 같이 그대로 두었다. 궁중의 여악이 살아남은 것이다.

女樂에서 주로 담당할 음악은 향악과 당악이었다. 그래서 연산군에 의한 여악의 오용과 남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악과 당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향악과 당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면서 동시에 여악의 혁파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논의되는 사정 속에서 향악과 당악은 비록 지속되었지만, 그 實存力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6) 중종 14년(1519) 2월 무인(14일).

27) 중종 14년(1519) 2월 신묘(27일).

28) 邊太燮, 『韓國史通論(四訂版)』(三英社, 1999), 306쪽.

29) 金鍾洙, 「조선 前·後期 여악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9), 132쪽.

이와 같은 中宗代에 제기된 강력한 여악 혁파논의는 향악과 당악의 實存力과 후대로의 持續力을 크게 약화시킨 원인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³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향악과 당악의 實存力 약화 속에서도 중단 없었던 女樂의 後代 持續은, 비록 現傳의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오늘날로의 향악과 당악의 傳承을 가능하게 한 動因의 하나로 파악된다.

III. 宣祖代(1567~1608)~光海君代(1608~1623)의 鄉樂과 唐樂

朝鮮朝 건국 이래로 최대의 國難을 당한 때는 宣祖代였다. 壬辰과 丁酉의 두 倭亂으로 국가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宣祖 初葉은 우리음악의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던져준 때이기도 하다. 즉 安璫(?~?)은 선조5년(1572) 現傳 最古의 民撰 樂譜³¹⁾로 알려진 『琴合字譜』를 내 놓았다. 그래서 宣祖代에 본격적으로 궁중의 음악의 일부가 이 『琴合字譜』를 통해서 궁궐의 담 밖에 알려질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宣祖代는 音樂史의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기이다. 그러면 선조 이후 光海君代에 이르기까지 궁중의 향악과 당악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1. 鄉樂과 唐樂에 대한 論議와 鄉樂과 唐樂

保太平·定大業 : 선조대에도 세조 이후 종묘를 위해 쓰인 보태평과 정대업은 여전히 지속된 향악이었다. 그런데 선조 35년(1602)의 기록에 의하면 이 보태평과 정대업이 昭敬殿³²⁾과 孝敬殿³³⁾의 음악으로 잘못 사용된 적도 있었다.³⁴⁾ 물론 이는 2회의 倭亂을 거친 후의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생긴 일일 것이다. 그러나 宣祖朝 이후 이 둘은 宴享에서는 연주되지 않았다.³⁵⁾ 회례를 위해 창제된 보태평

30) 『仁宗實錄』과 『明宗實錄』에는 향악과 당악에 관한 기록이 눈에 띄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향악과 당악은 위와 같이 『中宗實錄』 위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31) 成慶麟, 「琴合字譜」, 『韓國音樂學資料叢書(22): 琴合字譜 外』(國立國樂院, 1987), 3쪽.

32) 成宗의 妃 韓氏의 魂殿.

33) 宣祖의 妃 懿仁王后의 魂殿.

34) 선조 35년(1602) 9월 신미(12일).

과 정대업이 세조 때 종묘악으로 채택된 이후 간혹 연향에서도 사용되었으나, 연향에서의 연주 전통이 선조대에 이르러 멈춘 것이다.

한편 『宣祖實錄』에 의하면 秋享 祭禮에 宗廟의 禮에 따라 행한 잘못된 孝敬殿과 昭敬殿의 禮가 거론되면서 孝敬殿의 악장을 별도로 짓도록 하였다.³⁶⁾ 그리고 『악학궤범』을 근거로 하여 昭敬殿의 樂으로 參神에 洛陽春, 初獻에 猗歟曲, 亞獻에 維上曲, 終獻에 淑聖曲, 辭神에 洛陽春이 소개되고 있다.³⁷⁾ 그런데 『樂學軌範』에 의하면 소경전에 쓰여진 음악은 문소전의 음악과 같았고, 文昭殿에 쓰인 음악은 參神에 洛陽春, 초헌에 桓桓曲, 아헌에 維皇曲, 종헌에 靖東方曲이었다.³⁸⁾ 그러나 辭神의 樂에 관한 기록은 『악학궤범』에 보이지 않는다. 환환곡은 당악 中腔승의 판 이름이다.³⁹⁾ 그러니까 선조대의 이 기록은 辭神의 樂인 洛陽春만이 『악학궤범』의 기록과 다르고 나머지는 『악학궤범』과 같은 향악과 당악이었다.

宣祖 이후에 保太平과 定大業이 연향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선조실록』의 위 기록은 당시의 향악과 당악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특히 보태평과 정대업이 종묘가 아닌 목적의 祭樂으로 쓰여진 逸脫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선조실록』에 보이는 향악과 당악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어서 이후 선조의 治世 동안 소경전의 제향에서 위 향악과 당악곡들이 『악학궤범』의 규범대로 실제로 연주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⁴⁰⁾ 그러면 광해군대의 향악과 당악은 어

35) 李在淑(外),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74쪽.

36) 선조 35년(1602) 9월 신미(12일); 9월 계유(14일).

37) 선조 35년(1602) 9월 신미(12일), “昭敬殿 則參神奏洛陽春 初獻奏猗歟曲 亞獻奏維上曲 終獻奏淑聖曲 辭神奏洛陽春.”

38) 『악학궤범』 時用俗部祭樂

39) 申大澈, 앞의 논문(2001), 110쪽. 이 글의 같은 곳에서 필자는 『樂學軌範』의 文昭殿과 昭敬殿의 參神樂 洛陽春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40) 한편 임진왜란 이전의 作으로 여겨지는 蛟山 許筠(1569~1618)의 詩 ‘閱樂’에는 향악과 당악으로 慢調의 大葉, 井邑, 그리고 步虛子의 연주 모습과 향악정재로 牙拍舞, 響鉞舞, 舞鼓, 그리고 教坊歌謠의 연주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龍飛御天歌를 노래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다. 음악인이 아닌 허균의 눈에 비친 이들 樂의 모습에는 그 묘사에 약간의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주 광경이 이렇게 시에 담긴 사실에 의한다면, 임진왜란 이전의 궁중에서 향악과 당악이 자주 연주되었음은 분명하다. 張正龍·梁彥錫(共譯), 『許氏五文章家 漢詩國譯集』(江陵市, 2000), 419~420, 440쪽; 申大澈, 『蘭雪軒 許楚姬와 蛟山 許筠의 詩에 담긴 音樂과 그 世界』, 『草堂 鄭鎬敦院長 古稀紀念論叢 江陵文化散策』(古稀紀念論叢刊行委員會, 2005), 557~558쪽.

떠했을까?

위에서 언급한 소경전과 효경전에서의 보태평과 정대업의 잘못된 奏樂은 광해군대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특히 迎新과 奠幣에 이 두 樂이 쓰였다.⁴¹⁾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선조대 이후에도 보태평과 정대업이 효경전이나 소경전에서 계속 쓰여 졌음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로는 보태평과 정대업의 용도가 확대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잘못이 이후에 시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敎坊歌謠와 鶴舞·蓮花臺 : 『光海君日記』에는 교방가요 관련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교방가요에는 향악정재 학무와 연화대가 수반된다. 따라서 교방가요와 함께 이 둘과 관련된 기사도 자주 확인된다.⁴²⁾ 이렇게 교방가요와 관련된 기사가 『光海君日記』에 자주 등장하는 까닭은 광해군이 교방가요 보기를 아주 즐겨했기 때문이다. 그는 女樂과 儺戲를 좋아했고,⁴³⁾ <인용 8>의 기사와 같이 종묘의 제사 후 還宮 길에 해가 기울도록 교방가요 보기를 즐겼다.

<인용 8> 사간원이 아뢰었다. “오늘이 비록 매우 경사스러운 날이기는 합니
다만, 밤새도록 제사를 지냈으므로 필시 옥체가 많이 손상되었을 것이니 오랫동안 御駕를 멈추시고 배우들의 놀이와 여악을 관람하시는 것은 참으로 聖德이 아닙니다. 속히 正殿으로 돌아가셔서 신하들의 축하를 받으소서.” 또 사헌부가 아뢰었다. “... 채봉과 향산은 관람할 것이 아닙니다. 속히 환궁하여 ... 큰 禮를 마무리 하소서.” ... 사헌부가 재차 아뢰었다. “관복을 이미 내려서 태묘에 고했으니 ... 돌아가셔서 신하들의 하례를 받으소서.” 사간원이 세 번째 아뢰었다 ... 승정원과 홍문관도 어가 앞에서 세 번이나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아침에 廟門을 나와 해가 기운 다음에야 돌아왔다(司諫院啓曰 今日雖曰大慶 連夜行祭 必多玉體之傷 而良久駐輦 觀此又唱女樂 實非聖德之事也 請亟還正殿 以受臣民之賀 司憲府啓曰 ... 則彩棚香山 非所當觀也 請速還宮 ...

41) 光海君 2년(1610) 閏 3월 무진(23일); 5월 신미(27일).
42) 光海君 7년(1615) 6월 무진(23일); 6월 계미(28일); 9월 병술(13일); 8년(1616) 5월 경오(1일); 9년(1617) 7월 을해(13일); 9월 경오(8일); 9월 기묘(17일).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교방가요 관련 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연화대는 『악학궤범』 향악정재도의 敎坊歌謠의 하나로 학무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향악정재로 볼 수 있다.
43) 光海君 5년(1613) 9월 경진(25일). “王好女樂儺戲”

以完大慶之禮 … 司憲府再啓曰 冠服旣降 太廟已告 … 請亟還法殿 以受群賀
司諫院三啓 … 承政院弘文館亦於輦前三啓 皆不從 平明出廟門 日昃始還宮).⁴⁴⁾

處容舞·拋毬樂·獻仙桃 : 광해군이 직접 즐긴 정재는 아니나 『광해군일기』는 향악정재 처용무, 당악정재 포구락과 헌선도에 관한 기사도 담고 있다.⁴⁵⁾ 그래서 『광해군일기』는 『선조실록』 보다는 향악과 당악에 관련된 기사를 조금은 더 담고 있다.

『광해군일기』의 기록에서 광해군대의 궁중에서 벌어진 향악과 당악의 실제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위와 같이 알게 되었지만, 광해군 2년(1610)의 『梁琴新譜』 開判과 『樂學軌範』의 復刊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둘이 우연히도 같은 해에 이루어진 사실이 재미있다. 이 둘 중 앞의 것은 궁 밖에서, 뒤의 것은 궁 안에서 같은 해에 이루어진 주목되는 음악적 사건이다. 광해군의 『악학궤범』 복간은 향악·당악은 물론 후대로의 아악의 지속에 큰 도움을 준 중요한 樂政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당시 監校의 직분을 맡은 左坊典樂 韓德弘과 右坊典樂 林桓은 왕으로부터 加資의 恩典을 입었고, 특히 林桓은 堂上官의 자리에 까지 오를 수 있었다.⁴⁶⁾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壬辰과 丁酉 兩倭亂을 겪은 선조대의 향악과 당악의 실존력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태평과 정대업이 소경전과 효경전에서 잘못 올려지기도 했고, 이러한 현상은 광해군대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광해군대에 들어와 이와 같은 향악과 당악의 實存力은 많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광해군이 즐긴 극히 少數의 향악과 당악 관련 기사를 담고 있지만, 『광해군일기』에 향악과 당악 관련 기사가 『선조실록』보다는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도 확인이 된다.⁴⁷⁾ 광해군대의 『악학궤범』의 복간도 이러한 脈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비록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광해군대에 이 두 갈래의 음악의 실존력이 이렇게 회복된 가장 큰 까닭 중 하나는 광해군이 敎坊歌謠와 女樂, 그리고 儺戲 보기를 즐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光海君은 燕山君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는 汚名을 남겼지만, 그의 이러한 취향이 燕山君이 취한 취향의 결과와 같이 鄉樂과⁴⁸⁾ 唐樂의

44) 光海君 9년(1617) 9월 기묘(17일).

45) 光海君 7년(1615) 12월 신해(9일); 8년(1616) 5월 갑신(15일); 12년(1620) 11월 임오(9일).

46) 宋芳松, 『樂掌謄錄研究』(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126-127쪽.

47) 물론 『광해군일기』에 담겨있는 향악과 당악만이 당시에 연주된 음악이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實存 및 이의 후대로의 持續과 傳承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動因이 되었다.

2. 女樂에 대한 論議와 鄉樂과 唐樂

明宗(1545~1566) 말엽과 선조 초엽에 활발히 진출한 사람들로 인해 조광조는 도학의 전수자로 재평가되었고, 선조대 후반에 이르러 外宴에 女樂을 대신해 男樂의 사용이 기정사실화되었다.⁴⁹⁾ 外宴에서 여악 폐지가 방침이 된 것이다. 여악에 관한 부정적인 논의의 계속은,⁵⁰⁾ 비록 外宴에 限했지만, 이렇게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外宴에서의 여악 폐지는 방침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여악에 의한 향악과 당악은 이후도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

光海君代에도 여악의 혁파 논의는 계속되었다. 특히 司憲府는 여악을 非禮라고 하면서 국가가 왜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심히 겪고 있는 때라는 이유로 <인용 9>와 같이 강력히 여악의 다시 세움을 반대하였지만, 光海君은 慈殿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를 윤택하지 않았다.

<인용 9> 사헌부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여악은 非禮입니다. 비례의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난리를 겪은 후 국가가 어렵고, 또 흔들리고 있으니 참으로 풍요롭게 즐길 때가 아닙니다. 여러 업무가 아직 겨룰이 없는데 여악을 세우는 일은 더욱 급선무가 아닙니다. 예조에서 妓樂을 다시 설치하는 公事를 거행하지 말게 하소서 …” “… 여악의 일은 풍요롭게 즐기기를 힘쓰려하는 것이 아니다. 위로 慈殿이 계시니 소락하게라도 베풀지 않을 수 없다. 윤택하지 않는다”(司憲府啓曰 女樂非禮也 非禮之樂不可以爲悅 況亂後板蕩 固非豐亨豫大之時 庶務尙且未遑 女樂復立 旭非先務之急 禮曹妓樂還設 公事 請命勿爲舉行 … 女樂事 非務爲豐亨之舉 上有慈殿 不可不略設 不允).⁵¹⁾

48) 申大澈, 앞의 논문(2001), 116쪽.

49) 金鍾洙, 앞의 논문, 132쪽.

50) 여악 혁파에 관한 선조대의 무수한 논의는 내·외연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왜의 사신을 위한 사신연에서의 여악도 대상이었다. 선조 5년(1572) 11월 계미(16일); 14년(1581) 3월 기사(6일); 同 14년(1581) 3월 계사(30일).

51) 광해군 2년(1610) 3월 갑신(8일).

광해 2년의 <인용 9>의 기사 외에도 이후 여악의 설치 반대와 이의 폐지를 원하는 무수한啓가 이어지나 王은 거의 위와 같은 이유로 윤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路次의 여악 정제 수가 줄기는 하였으나,⁵²⁾ 여악은 중단 없이 후대로 지속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광해군은 여악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하였다. 즉 그는 親耕 후의 大禮를 위한 정제의 연습에 妓生과 樂工의 연습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고,⁵³⁾ 음악의 효율적인 연습을 위하여 비록 政府나 禮曹라 하더라도 壽宴이나 慶宴이 아니면 妓生이나 樂工을 定送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⁵⁴⁾ 광해군이 여악의 지속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까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女樂과 儺戲를 특별히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는 好女樂 수준을 뛰어넘은 女樂 擁護論者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好女樂 수준은 신하들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上壽宴에서 女樂을 베풀고 밤이 되어서야 파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되는 상수연에서의 여악 철거를 원하는 신하들의 請을 강하게 거부할 수 있었다.⁵⁵⁾

光海君의 女樂 擁護는 鄉樂과 唐樂의 實存 및 이 둘의 후대로의 持續과 傳承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朝鮮朝의 궁중에서 女樂은 대부분이 秀才를 담당하였고, 또 많은 수의 鄉樂과 唐樂은 秀才와 直接·間接으로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이 鄉樂과 唐樂에 미친 결과는 그의 政治的인 생각과 행동이 後世에 미친 결과와는 相反될 수밖에 없다. 그의 정치적 行脚의 결과와 여악을 옹호한 음악적인 行脚의 결과가 연산군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묘한 逆說을 이루고 있다.

IV. 仁祖代(1623~1649)~景宗代(1720~1724)의 鄉樂과 唐樂

反正을 통해 왕위에 오른 仁祖는 丁卯(1627)와 丙子(1636)의 두 胡亂을 당한

52) 광해군 9년(1617) 9월 계미(21일), “且女樂呈才 已今減數.”

53) 광해군 11년(1619) 3월 갑오(11일).

54) 광해군 14년(1622) 2월 정해(21일).

55) 광해군 10년(1618) 9월 을묘(30일), “乙卯 王於仁政殿 受上壽宴 設女樂行十酌 入夜而罷 … 三司啓曰 … 至於女樂 旭佛合觀臨 … 請亟命停撤 以盡敬天之道 答曰 宴禮已定 今不可停撤.”

어려운 시기의 왕이었다. 이후 외민족에 의한 國亂은 없었으나, 여러 번의 전쟁으로 인하여 朝鮮朝의 國力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枯渴된 상태였다. 생계가 어렵던 樂人들은 이러한 난국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직업을 바꾸었고, 樂生과 樂工 중에는 포로가 되거나 죽은 사람도 많았다.⁵⁶⁾ 이러한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되었으나, 肅宗代(1674~1720)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이 시기 宮中에서의 鄉樂과 唐樂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1. 鄉樂과 唐樂에 관한 論議와 鄉樂과 唐樂

敎坊歌謠 : 反正으로 등극한 인조는 왕의 舉動에 前後의 鼓吹를 못하게 하였고,⁵⁷⁾ 禮曹의 청에 따라 敎坊歌謠에 쓰이는 沉香山을 네거리에서 불태워 없애라고 명하였다.⁵⁸⁾ 따라서 교방가요는 당연히 禮曹의 啓에 따라 올리지 말게 하였으며,⁵⁹⁾ 만만치 않은 費用으로 말미암아 樂工들의 紅紬衣를 戎服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⁶⁰⁾ 이는 모두가 光海君의 亂政과 弊端을 바로 잡기 위한 樂政의 일환으로 그 모습은 燕山君 이후의 中宗代의 그것과 흡사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仁祖實錄』에는 宗廟를 위한 保太平과 定大業 외에는 鄉樂이나 唐樂과 관련된 기록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廟樂도 亂後에 오래도록 폐지하였다가 다시 同 24년(1646)에 이르러 다시 쓸 지경이었으니까⁶¹⁾ 두 胡亂 이후의 인조대는 鄉樂과

56) 張師勛, 앞의 책(1986), 379쪽.

57) 仁祖 元年(1623) 3월 庚戌(20일).

58) 仁祖 元年 3월 乙卯(25일).

59) 仁祖 12年(1634) 7월 己酉(25일).

60) 仁祖 2年(1624) 3월 丁丑(8일).

61) 仁祖 24年(1646) 8월 辛丑(28일), “上以亂後 廟樂久廢 下教于禮曹 自明年春享 復用樂.” 『仁祖實錄』 권47, 57a7. 한편 인조 8년(1630) 대왕대비를 위한 進豊呈에 落點된 獻仙桃, 壽延長, 金尺, 鳳來儀, 蓮花臺, 拋毬樂, 響鈸, 舞鼓, 處容舞의 아홉 향악과 당악 정재명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아홉 정재 모두의 실제 연행이 의문시되고 있고, 또 이때가 시기적으로 丁卯胡亂(1627) 이후 얼마 안 된 어려웠던 시절의 일이라 이 아홉 정재의 실제 연행 여부는 조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13): 豊呈都監儀軌·進宴儀軌(己亥) 外』(1983), 43쪽; 김영운, 「조선후기 국악의 악무 연구: 인조~영조대의 관련의례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1(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21쪽.

唐樂은 물론 거의 모든 樂의 實存力이 아주 약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孝宗(1649~1659)은 음악, 여색,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지 않은 왕이었다.⁶²⁾ 그래서 서인지 『孝宗實錄』에는 廟樂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樂에 관련된 기사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시에 행한 『樂學軌範』의 開刊도 ‘廟廷之樂’⁶³⁾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인조대에 정지된 교방가요는 顯宗代에도 계속 정지되었고,⁶⁴⁾ 약화된 교방가요의 鄉樂과 唐樂의 實存力은 이때까지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다.⁶⁵⁾

肅宗代(1674~1720) 초기와 景宗代에도 教坊歌謠가 정지된 적이 있었지만,⁶⁶⁾ 교방가요는 중단되지 않았다. 숙종대에는 永昭殿과⁶⁷⁾ 敬寧殿에도 종묘악을 사용하게 하여⁶⁸⁾ 종묘악의 쓰임이 확대되었다. 이외에 아래와 같이 숙종대의 여러 의례에 쓰인 많은 향악곡과 당악곡이 확인되고 있다.

與民樂慢·千年萬歲·여민락만·천년만세·여민락만·여민락만·천년만세·五雲開瑞朝·初舞·淸平曲·井邑慢機·牙拍·桓桓曲[中腔令]·步虛子令·響鈸·夏雲峰·여민락만·舞鼓·洛陽春·보허자령·廣袖舞·維皇曲·與民樂令·향발·靖東方曲·보허자령·太平年·與民樂·處容舞 : 肅宗 32년(1706)의 進宴에 연주된 鄉樂과 唐樂, 그리고 정재의 총수는 앞의 이 20곡이었다.⁶⁹⁾ 이 진연에서 시작과 끝의 여민락만과 여민락은 고취악으로 연주된 음악이었다. 나머지 향악과 당악곡들은 모두가 殿庭軒架나 登歌로 연주된 宴禮樂이었다. 위 곡의 대부분은 同 40년(1714)의 崇政殿 진연에서도 연주되었다.⁷⁰⁾ 즉 이중 천년만세와 유흠곡이 제외된

62) 孝宗 5년(1654) 정월 丙午(15일).

63) 孝宗 6년(1655) 3월 癸巳(8일).

64) 顯宗 2년(1661) 6월 乙酉(8일).

65) 이와 같은 實存力의 弱化는 『樂堂謄錄』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仁祖 15년(1637)~英祖 29년(1753) 사이 약 120년간의 掌樂院事를 담은 이 문헌에는 특이하게도 음악 실체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 사람과 악기, 그리고 음악관련 행사들이 이 문헌에 주로 담겨 있다. 『악장등록』을 기록한 인사들이 음악 실체를 『악장등록』에서 다루지 않았던 까닭은 음악의 실존에는 큰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바로 이러한 사실은 음악의 실존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6) 肅宗 2년(1676) 2월 丙寅(14일); 景宗 2년(1722) 6월 임술(9일).

67) 肅宗의 첫 번째 왕비였던 仁敬王后 金氏의 魂殿.

68) 숙종의 계비 仁顯王后의 魂殿. 肅宗 45년(1719) 6월 丙寅(25일).

69) 肅宗 32년(1706) 8월 壬子(27일), 연주된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한글로 표기된 곡명은 중복 연주된 곡이다. 이하 같음. []의 중강령은 필자에 의했음.

70) 林美善, 『朝鮮朝 殿庭軒架의 文獻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97), 104쪽.

나머지 곡들과 정재 모두는 同 40년(1714)의 崇政殿 進宴에서 연주되었다.⁷¹⁾ 이후 同 45년(1719) 9월 丁酉의 進宴에서도 새로이 추가된 維天之曲·鄉唐交奏와 함께 위 20곡의 향악과 당악, 그리고 정재는 비록 연주된 절차와 순서가 바뀐 경우가 있었지만 모두 연주되었다.⁷²⁾

肅宗 45년의 進宴에 올려진 宴禮樂에서 정재를 제외한 향악과 당악에 관련된 기록을 『樂學軌範』의 것과 비교하면 肅宗 45년 進宴의 음악에서 9곡이 제외되면서 5곡이 추가되어 연주된 모든 曲의 數에서는 숙종대의 것에서 축소된 것이 되었다.⁷³⁾ 물론 이들 곡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조선조의 궁중에서 여러 목적과 용도로도 연주된 음악들이었다.⁷⁴⁾

聖壽無疆·太平年·步虛子·五雲開瑞朝·水龍吟·洛陽春 : 鼓吹에는 唐樂이나 唐樂系의 음악이 연주되었고, 鼓吹의 의식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鼓吹樂은 정해져 있었다.⁷⁵⁾ 그런데 肅宗代에 이르러 朝參儀에 연주되는 鼓吹樂은 <인용 10>과 같았다.

<인용 10> “예전의 朝參時의 鼓吹樂으로는 陸座時에 唐樂 聖壽無疆을, 群臣拜禮에 唐樂 太平年을, 還宮時에 唐樂 步虛子를 연주하였습니다. 지금 세자의 조참시에는 … 出宮時에 唐樂 五雲開瑞朝의 尾後를, 群臣拜禮時에는 唐樂 水龍吟을, 入宮時에는 唐樂 洛陽春을 연주하게 하소서” 하니 …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前此朝參鼓吹樂 陸座時奏唐樂聖壽無疆 群臣拜禮時唐樂太平年 還

71) 肅宗 40년(1714) 9월 丁巳(19일).

72) 肅宗 45년(己亥) 9월 丁酉(28일); 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13): 豊呈都監儀軌·進宴儀軌(己亥)外』(1983), 96쪽. 『肅宗實錄』의 기록의 첫 부분에는 여민락이라고만 되어있고, 임미선의 위 글에는 숙종 45년 9월 정유의 것에서 維天之曲이 빠져있다. 이 유천지곡은 유흥곡[풍입송]이다. 『악학궤범』 時用俗部祭樂의 文昭殿 亞獻 제1실과 제2실의 곡으로 쓰인 곡은 각각 유흥곡과 維天曲이다. 그런데 이 『악학궤범』의 유천곡과 유흥곡의 가사의 내용은 다르나 실은 동일곡인 풍입송이다. 풍입송은 세종 15년 문소전의 태종을 위한 아현에서 유천곡으로 改名되었다. 『악학궤범』 권2, 20a4-8; 申大澈, 앞의 논문(2001), 87, 94쪽.

73) 林美善, 앞의 논문, 106쪽. 이 글에는 숙종 45년의 進宴에서 연주된 음악에 유천지곡이 빠져 있으므로 이 곡을 포함하면 곡의 수로는 6곡이 숙종 45년 進宴의 음악에 추가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유천지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흥곡임으로 실제로는 5곡이 추가되었다.

74) 위곡 중 ‘천년만세·청평곡·오운개서조·환환곡·하운봉·태평년지악 등은 무슨 곡의 탄 이름인지 알 수 없다’고 하나 이들 곡은 당악곡이다. 張師助, 『肅宗 己亥 進宴儀軌 解題』, 『韓國音樂學資料叢書(13): 豊呈都監儀軌·進宴儀軌(己亥)外』(國立國樂院, 1983), 12쪽.

75) 申大澈, 『朝鮮朝의 鼓吹와 鼓吹樂』,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論文(1995), 122~139쪽.

宮時奏唐樂步虛子 今世子受朝參 … 出宮時用唐樂五雲開瑞朝用尾後 群臣拜時
唐樂水龍吟 入宮時奏唐樂洛陽春 … 上可之 … 76)

<인용 10>의 鼓吹樂은 世宗代の 그것과 같다.⁷⁷⁾ 그러니까 <인용 10>의 위 당악 6곡은 世宗代 鼓吹樂으로 쓰인 唐樂 一部(혹은 鼓吹樂 一部)가 肅宗代에도 변함없이 쓰인 음악임을 의미한다.⁷⁸⁾ 즉 왕의 조참과 세자의 조참에 쓰인 위 당악의 고취악 6곡은 世宗의 新樂創製 이전부터⁷⁹⁾ 肅宗代에 이르기까지 鼓吹樂으로 쓰인 당악이었다.

與民樂·維天之曲·千年萬歲·五雲開瑞朝·井邑慢機·牙拍舞·清平曲·少[步]虛子·響鉞·夏雲峰·천년만세·舞鼓·洛陽春·여민락·廣袖舞·太平年·여민락·處容舞·여민락 : 이 15곡의 鄉樂과 唐樂, 그리고 朶才는 肅宗 45년(1719) 4월 庚申에 景賢堂에서 거행된 耆老臣宴에 연주된 음악이요, 정재이다.⁸⁰⁾ 五雲開瑞朝·步虛子·太平年·洛陽春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鼓吹樂으로도 연주된 음악이다. 與民樂은 이 耆老臣宴의 왕의 出宮과 還宮에서 鼓吹樂으로도 쓰였다. 이와 같이 당악곡이 鼓吹樂으로, 宴禮樂으로, 혹은 祭禮樂으로 두루 쓰인⁸¹⁾ 것은 오랜 전통이었다.

鄉樂과 唐樂의 實存力이 肅宗代에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위와 같이 여러 宴禮와 鼓吹에서 쓰인 많은 수의 향악과 당악이 『肅宗實錄』과 숙종 45년의 『進宴儀軌』에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이 두 갈래의 여러 음악이 宴禮樂과 鼓吹樂으로 강한 實存力을 肅宗代에 이르러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 두 갈래 음악의 연주가 단절되지는 않았겠지만, 이후의 『景宗實錄』에는 향악이나 당악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두 갈래의 음악이 경종대에는 잘 연주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두 갈래의 음악에 대한 당시의

76) 肅宗 43년(1717) 7월 庚辰(28일).

77) 世宗 27년(1445) 2월 丙午(2일); 申大澈, 앞의 논문(1995), 38쪽.

78) 그러나 肅宗의 世子는 父王의 병환으로 인해 미안한 마음으로 ‘陳而不作’하였다.

79) 申大澈, 앞의 논문(1995), 143쪽.

80) 肅宗 45년(1719) 4월 庚申(18일), 연주된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여민락이 4회 중복되었다. 少虛子는 步虛子의 誤記로 보인다. 林美善의 앞의 논문, 104~105쪽에는 이 기로신연의 음악과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숙종 45년의 양로연 의식절차와 음악이 소개되어 있으나, 그 출처를 모르겠다.

81) 申大澈, 앞의 논문(1995), 144쪽.

관심이 적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이 옳든, 혹은 그르든 肅宗代에 위의 사례와 같이 宴禮樂으로, 또 鼓吹樂으로 연주된 많은 향악과 당악이 확인된 사실은 音樂史的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이 시절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많은 수의 鄉樂과 唐樂이 연주되면서 애호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달리는 中宗(1506~1544) 이후의 前代와는 달리 肅宗代에 위와 같은 이 두 갈래의 음악이 매우 강한 實存力을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2. 女樂에 대한 論議와 鄉樂과 唐樂

仁祖는 卽位 후 곧 女樂을 革罷하여야 한다는 諫院의 啓에 따라 <인용 11>과 같이 여악을 혁파하여 당시의 사람들을 탄복하게 하였다.

<인용 11> 諫院이 또 아뢰었다. … “여악의 설치는 곧 태평성대 때의 일입니다. 국난을 겪은 후 폐지하고 설치하지 않았는데 廢朝 광해군대에 이르러 널리 娼妓를 불러들여 궁중을 출입하게 하면서 탐닉함에 도가 없었고, 荒亂이 극에 이르렀었습니다. 지금 쇠신하는 때이니 … 혁파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왕이 따랐다. 史臣은 論하겠다. 폐조 때 사치가 지나치게 심하여 군신상하가 놀기만을 좋아하며 향락으로 걱정을 잊어 危亡이 닥쳐움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운 이들이 한심하게 여겨온 지 오래인데 왕이 쇠신하려 하는 때에 혁파를 명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諫院 … 又啓曰 女樂之設 乃昇平全盛時事也 終亂以後 廢而不舉 至于廢朝 廣集娼妓 使之出入宮掖 耽樂無道 荒亂極矣 今當更時之日 … 請命革罷 上終之 史臣曰 廢朝時 佚侈已甚 君臣上下 慢遊是好 以樂 悞憂 不知危亡之將至 識者之寒心久矣 更始之日 則命革罷 人皆歎服).⁸²⁾

光海君의 荒亂은 反正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에게는 극복되어야 할 중대사였다. 따라서 <인용 11>과 같은 사정 속에서 여악의 革罷를 諫하는 신하들의 뜻을 인조는 거스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조 초기의 女樂 革罷는 當爲의 政事

82) 仁祖 元年 3월 癸丑(23일).

요, 樂政이 하나였음에 분명하다. 인조의 여악 폐지는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凶年을 이유로 들면서 男樂도 정지하게 하였다.⁸³⁾ 그러나 인조대 역시 前代와 마찬가지로 여악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兵曹 判書 李貴(1557~1633)의 妓樂을 그대로 두기를 간청한 劄에 의해 확인된다.⁸⁴⁾ 이후 肅宗代에도 한 때 女樂(外宴)을 쓰지 않음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으나⁸⁵⁾ 여악은 역시 정지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정지되지 않은 女樂은 朝鮮朝 宮中の 鄉樂과 唐樂이 後代로 이어져 實存하게 할 수 있는 밑받침의 하나가 되었다.

V. 맺는말

지금까지 中宗代(1506~1544) 이후 景宗代(1720~1724)에 이르는 시기의 朝鮮朝 宮中の 鄉樂과 唐樂의 지속 모습을 살펴본 결과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保太平과 定大業은 宣祖代(1567~1607), 光海君代(1608~1623), 그리고 肅宗代(1674~1720)에 宗廟가 아닌 祭禮에서도 확대되어 쓰인 적이 있었으나, 선조대 이후에는 宴享樂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中宗代에는 연주 된 사실보다는 향악과 당악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를 한 사실에서 이 두 갈래의 음악 지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중종대는 反正을 통해 實勢에 오른 士林들에 의해 연산군대의 잘못된 樂政 때문에 특별히 향악의 가치가 부정되고 평가절하 되었으며, 향악의 일부 노랫말이 改詞되었다. 그리고 女樂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여악의 革罷가 강하게 논의되었으나, 內宴과 中宮을 위해서 여악은 폐지되지 않고 持續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악의 지속은 後代로 향악과 당악의 傳承을 가능하게 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악과 향악 및 당악에 대한 강한 부정적 시각은 향악과 당악의 실존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83) 仁祖 3年 正月 癸丑(4일).

84) 仁祖 8年 4月 甲寅(5일), “甲寅兵曹判書 李貴上 劄請留妓樂.”

85) 肅宗 31년(1705) 8월 庚申(29일).

光海君(1649~1623)은 鶴舞와 蓮花臺가 演行되는 敎坊歌謠와 女樂, 그리고 儺戲를 애호한 왕이었다. 광해군 시절의 『악학궤범』 복간은 樂政의 긍정적 결과였다. 비록 前代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이 시절에도 향악과 당악의 실존력은 약화되어 있었다. 광해군대에도 여악의 혁파 논의는 계속되었으나, 여악 擁護論者인 광해군은 중종대와 같은 이유로 여악의 혁파를 不允하였다. 이와 같은 不允과 연산군을 닮은 광해군의 好樂的인 개인적 취향은 朶才를 포함한 향악과 당악의 지속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反正을 겪은 仁祖代(1623~1649)는 中宗代와 마찬가지로 鄉樂과 唐樂은 물론 女樂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시기였다. 仁祖는 卽位 初에 光海君의 亂政과 弊端을 바로 잡을 요량으로 鼓吹를 정지시키기도 했고, 敎坊歌謠에 필요한 沉香山을 불태웠으며, 일시적으로 여악을 혁파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향악과 당악은 물론 거의 모든 樂의 實存力은 胡亂의 영향으로 크게 약화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孝宗代(1649~1659)에도 계속되었다.

肅宗代(1674~1720)에 이르러서 進宴과 耆老宴, 그리고 鼓吹에서 아래와 같은 향악과 당악 및 정재의 실제로 사용된 事例가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記錄上으로 향악과 당악, 그리고 정재의 實存力이 肅宗代에 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鄉樂: 與民樂(慢과 令 포함) · 井邑慢機 · 維皇曲 · 靖東方曲 · 鄉唐交奏
 唐樂: 步虛子(令) · 洛陽春 · 太平年 · 聖壽無疆 · 水龍吟 · 五雲開瑞朝 · 夏雲峰 · 千年萬歲 · 清平曲 · 桓桓曲
 朶才: 敎坊歌謠 · 牙拍 · 響鈸 · 舞鼓 · 處容舞 · 初舞 · 廣袖舞

위 향악곡과 당악곡 모두는 肅宗代에 宴禮樂으로서 강한 實存力을 갖춘 음악이었다. 그리고 일부의 밑줄 친 곡은 鼓吹樂으로도 實存力을 갖춘 음악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확인된 재미있는 사실 둘은 唐樂曲이 鄉樂曲보다 훨씬 數가 많았고, 정재에서는 향악정재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朶才를 포함하여 肅宗代의 기록에 담긴 위의 鄉樂曲과 唐樂曲만을 소멸되지 않고 당시로 지속되어 연주된 음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당시에는 분명히 이보다 더 많은 鄉樂曲과 唐樂曲이 존재했고, 또 後代로 傳承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後續 研究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論究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참고문헌

- 『樂學軌範』. 서울: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68.
- 梁德壽, 『梁琴新譜』. 서울: 通文館, 1959.
-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1986.
- 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4): 呈才舞圖笏記』. 서울: 國立國樂院, 1981.
- 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13): 豊呈都監儀軌·進宴儀軌(己亥)外』. 서울: 國立國樂院, 1983.
- 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22): 琴合字譜 外』. 서울: 國立國樂院, 1987.
- 金鍾洙, 「조선 前·後期 여악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영운, 「조선후기 국악의 악무 연구: 인조~영조대의 관련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편), 『조선후기궁중연향문화(1)』. 서울: 민속원, 2003, 17~64쪽.
- 노동은, 「한국음악인들의 현실인식과 수행」. 노동은·이건용, 『民族音樂論』. 서울: 한길사, 1991, 155~208쪽.
- 邊太燮, 『韓國史通論(四訂版)』. 서울: 三英社, 1999.
- 成慶麟, 「琴合字譜」. 『韓國音樂學資料叢書(22): 琴合字譜 外』. 서울: 국립국악원, 1987, 3~5쪽.
- 宋芳松, 『樂掌謄錄研究』. 慶山: 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 申大澈, 「高麗와 朝鮮朝 初의 鄉樂과 唐樂」. 李惠求學術賞運營委員會, 『李惠求博士九旬記念音樂學論叢』. 1998, 243~262쪽.
- 申大澈, 「蘭雪軒 許楚姬와 蛟山 許筠의 詩에 담긴 音樂과 그 世界」. 『草堂鄭鎬敦院長古稀紀念論叢 江陵文化散策』. 古稀紀念論叢刊行委員會, 2005, 539~563쪽.
- 申大澈, 「世宗代 以後 燕山君代의 鄉樂과 唐樂」. 『韓國音樂研究』 第29輯, 2001, 81~119쪽.
- 申大澈, 「朝鮮朝의 鼓吹와 鼓吹樂」.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 李在淑(外),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林美善, 「朝鮮朝 殿庭軒架의 文獻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 張師助, 「肅宗 己亥 進宴儀軌 解題」. 『韓國音樂學資料叢書(13): 豊呈都監儀軌·進宴儀軌(己亥)外』. 서울: 국립국악원, 1983, 9~12쪽.
- 張師埏, 『增補 韓國音樂史』. 서울: 世光音樂出版社, 1986.

張正龍·梁彥錫(共譯), 『許氏五文章家 漢詩國譯集』, 江陵市, 2000.

韓國學中央研究院, 『朝鮮王朝實錄 音樂記事資料集: (1)~(8)』,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1996.

韓祐勳, 『改訂版 韓國通史』, 서울: 乙酉文化社, 1996.

국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조선조 중종 이후 경종에 이르는 궁중에서의 향악과 당악의 지속과 그 음악적 실존력의 문제가 다루어졌고, 그 결과는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보태평과 정대업은 선조대(1567~1607), 광해군대(1608~1623), 그리고 숙종대(1674~1720)에 종묘가 아닌 제례에서도 쓰였으나, 선조대 이후에는 연향악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중종대(1506~1544)의 향악과 당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행동, 그리고 및 여악 혁파에 대한 논의는 향악과 당악의 지속과 실존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광해군은 여악과 나희(儺戲)를 애호한 왕으로 여악의 열렬한 옹호론자였다. 그의 이와 같은 개인적 취향은 정재를 포함한 향악과 당악의 지속과 실존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었다.

인조(1623~1649)는 즉위 초에 광해군의 난정과 폐단을 바로 잡을 요량으로 고취, 침향산, 그리고 여악을 혁파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향악과 당악은 물론 거의 모든 악의 실존력은 약화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효종대(1649~1659)에도 계속되었다. 숙종대(1674~1720)에 이르러서 진연과 기로연, 그리고 고취에서 많은 향악과 당악 및 정재의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기록상으로 향악과 당악, 그리고 정재의 실존력이 숙종대에 와서 회복된 것이다.

숙종대의 향악과 당악은 연례악으로서 강한 실존력을 갖춘 음악이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고취악의 실존력도 갖춘 음악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음악적 상황에서 확인된 재미있는 사실 둘은 당악곡이 향악곡보다 훨씬 수가 많았고, 정재에서는 향악정재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재를 포함하여 숙종대의 기록에 담긴 위의 향악곡과 당악곡만을 소멸되지 않고 당시로 지속되어 연주된 음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당시에는 분명히 이보다 더 많은 향악곡과 당악곡이 존재했었고, 또 후대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구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 투고일 : 2007. 4. 13.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조선조(Joseon Dynasty), 향악(*Hyangak*), 당악(*Dangak*),
지속(continuance), 실존력(existential energy).